

## II. 국제전파관리 기구 및 관계법령

### 1. 국제전파관리 기구 및 조직

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나.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 협의회(APT)

다. 기타 국제기구

### 2. 국제협약 및 법·제도

가. 국제전파관련 협약

나. 국제전파관련 법·제도

# I. 국제전파관리 기구 및 관계법령

## 1. 국제전파관리 기구 및 조직

### 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은 1865년 5월 17일 설립된 국제전신연합(International Telegraph Union)을 모체로 하고 있다. 국제전신연합은 당시 전신서비스를 이용하던 유럽 20개국이 국가 간 상호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체결한 국제전신협약(International Telegraph Convention)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14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ITU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제전신연합 설립 당시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UN 산하 14개 전문기구중의 하나로서 유·무선 통신, 전파, 방송, 위성 주파수 등에 대한 규칙(Regulation) 및 표준(Standardization)의 제정, 권고안(Recommendation)의 개발·보급과 국제적인 조정·협력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ITU는 최고 정책결정 기구인 전권위원회의, 주요정책을 집행하는 이사회와 전파통신, 전기통신표준화, 전기통신개발 등 3개 부문에서 18개의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

ITU는 현재 19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연합의 소재지는 스위스 제네바이다. ITU의 선출직 임원은 각각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동일한 직위에서 연속 또는 비연속에 관계없이 2번의 임기만 가능하다.

**표2.1 ITU 운영진(2007~2010)**

구분	성명	출신 국가 및 지역		비고
		국가	지역	
사무총장	Mr. Touré	말 리	D (아프리카)	초임 (재임가능)
사무차장	Mr. Zhao	중 국	E (아시아/태평양)	초임 (재임가능)
BR국장	Mr. Tomofeev	러시아	C (동유럽)	재임
TSB국장	Mr. Johnson	영 국	B (서유럽)	초임 (재임가능)
BDT국장	Mr. Al-Basheer	사우디	E (아시아/태평양)	초임 (재임가능)

### 1) ITU 주요연혁

유럽 20개국이 전신서비스의 국가간 상호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체결한 국제전신협약(International Telegraph Convention)을 바탕으로 1865년 5월 17일 설립된 국제전신연합(International Telegraph Union)을 모체로 하여 설립되었다.

ITU의 주요 연혁은 (표 2.2)과 같다.

### 2) ITU 설립목적

ITU는 국제질서 및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업무의 내용, 조직구성, 추진절차 등을 시의적절하게 수정·변경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ITU의 설립 정신은 전세계의 주민이 정보통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한다는 ITU의 이념으로 확대되어 계승되고 있다.

- 전기통신의 개발과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모든 회원국 상호간의 국제적 협력 유지 및 확대
-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기통신기술 및 설비 등의 지원 촉진
- 전기통신서비스를 일반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설비 개발과 합리적 운용을 촉진

- 전 세계인에게 새로운 전기통신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 세계평화를 위한 전기통신의 이용 촉진
-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기통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적, 지역적 정부간 기구뿐만 아니라 민간기구까지 광범위한 협력을 도모함

**표2.2 ITU 연혁**

연 도	주요 내용
1865(01차PP)	International Telegraph Convention 체결(Paris) → ITU(International Telegraph Union) 설립 -Telegraph Regulations의 최초 발효
1868(02차PP)	최초의 International Telegraph Conference(Vienna) : ITU본부를 스위스 Bern에 두기로 결정
1885(03차PP)	최초로 국제전화서비스를 규정(International Telegraph Conference, Berlin)
1895	최초로 무선중계시스템(radio-relay system)에 의한 신호 전송(무선전신으로서 최초의 무선통신 형태)
1906(04차PP)	최초의 International Radiotelegraph Conference(Berlin) : International Radiotelegraph Convention 체결 → International Radiotelegraph Union 설립 - Radiotelegraph Regulations의 최초 발효(현재 Radio Regulations)
1924/1925	CCIF(International Telephone Consultative Committee)와 CCIT(International Telegraph Consultative Committee) 설립
1927(05차PP)	CCIR(International Radio Consultative Committee) 설립
1932(06차PP)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onvention 체결(ITU/IRU 통합회의, Madrid) → ITU 명칭을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으로 변경 - International Telegraph Convention과 International Radiotelegraph Convention을 통합
1947(07차PP)	IFRB(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ration Board) 설립 UN의 상설조직(a UN specialized agency)이 됨. 국제주파수분배표를 강제사항으로 선언
1956	CCIF와 CCIT를 CCITT(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Consultative Committee)로 통합
1959(09차PP)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ITU의 목적 및 관련 조직의 업무 개정(Geneva). RR 전면 개정. CCIR에 우주통신 관련 SG 신설
1982(12차PP)	Independent Commission for Worldwide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설립(Nairobi)
1992 (Additional PP)	High Level Committee 권고에 따른 ITU조직 개편 및 새로운 ITU헌장·협약 제정(Geneva) - ITU-R, ITU-T, ITU-D의 3개 부문(Sector)으로 구성/3개 부문 Conferences 개최 정례화
1996	UIFN(Universal International Freephone Numbers) 국제표준 채택
2000	IMT-2000 무선인터페이스 규격 승인(1st release of 3G radio interface specifications)
2002(16차PP)	디지털 격차 해소 결의 채택(Marrakesh)
2006(17차PP)	ITU헌장·협약상의 용어검토 결의(Telecommunication을 포함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로 확대)(Antalya)

### 3) 주요 업무

ITU는 국가간 전기통신 서비스의 국가간 상호접속을 용이하게 한다는 설립정신을 계승하여, 회원국간의 협력 증진을 통해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인 이용 등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국가간 무선국의 유해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대역의 업무분배, 무선주파수의 구역분배, 할당된 무선주파수의 등록
- 정지위성 궤도상의 궤도 위치나 여타 궤도 위성의 관련 특성 등록 업무
- 범세계적인 전기통신표준화 추진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전기통신설비와 통신망을 구축·개발 및 개선하는데 있어서 국제협력과 연대 촉진
- 효율적인 통신서비스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전기통신요금을 설정하도록 회원국 및 부문 회원간 협력

### 4) 우리나라의 주요 활동

우리나라는 1952년 ITU에 가입함으로써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한국전기통신공사(현재의 KT)가 설립되어 ITU 표준화활동에 주도적 참여를 하였다. 그러나 전기통신의 개방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1988년 국내 표준의 제정과 ITU 대응활동을 위한 민간 차원의 TTA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ITU활동이 전개되었으며, 2004년 전파연구소에 ITU-R, ITU-T, ITU-D 각 부문의 SG 구성에 대응한 한국 ITU 연구 위원회를 통합·재구성하여 ITU 대응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2년 ITU 가입 이후, 이사국 진출(PP-89), 연구반 부의장 진출(WTSC-93), RRB위원 진출(PP-02), 연구반 의장 진출(WTS A-04)과 함께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과제책임자(Rapporteur) 수임 등 지속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대응활동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문가 활동 측면에 서만 볼 때 국제적으로 ITU-R 분야는 9위, ITU-T 분야는 5위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ITU-T의 경우, 표준기고서 제출 건수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미·일·유럽에 비해 앞서고 있다.

**표2.3 우리나라의 ITU활동 주요연혁**

연도	주요 내용
1952	ITU 가입 (당시 체신부). PP 참석(Buenos Aires)
1958	CCITT(현재의 ITU-T) 참석
1959	PP 참석(Geneva), 무선통신주관청회의(Administrative Radio Conference) 참석
1981	ITU 사무국 직원에 우리나라의 전파전문가 채용(이기수)
1984	한국전기통신공사(KT)가 ITU국내연구단을 설립하고 CCITT분야의 활동을 담당
1989	TTA에 표준화위원회와 ITU위원회 구성
1989	프랑스 니스 PP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ITU 이사국 진출
1993	WTSC-93에서 국내 최초로 ITU 연구반 의장단 진출
1994	ITU 이사국 재선. ITU-T SG 7 개최(최초의 ITU회의 국내 개최)
1998	ITU 이사국 3선
1999	TDAG 의장에 이종순 APT사무총장 진출.
2001	TTA를 ITU-T의 표준참조기관으로 지정
2002	ITU 이사국 4선. ITU-R RRB 위원 진출(이기수)
2004	WTSA-04에서 ITU 연구반 의장으로 최초 진출(ITU-T SG 3 의장, 박기식)
2005	ITU-T Focus Group on NGN 회의/ITU-R JTG 6-8-9 회의 개최
2006	ITU 이사국 5선. ITU-T SG 17 회의 개최
2007	우리나라 T-DMB기술과 WiBro기술이 ITU-R권고에 반영. 2.3~2.4GHz대를 전세계 4G 공통 대역으로 신규 분배
2008	ITU-T SG 11/SG 13/SG 19 (NGN-GSI) 회의 개최

ITU-R의 전파 업무는 권고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작성 중심의 ITU-T와 달리 주로 규제적 측면에서 적용되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산·학·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ITU-R 활동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규제로서의 전파 이용은 최근 관련 시장 개척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표준화 활동을 발판으로 정보통신산업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기술·산업·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휴대인터넷서비스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휴대인터넷서비스를 위한 WiBro를 국내 원천기술로 개발하고 이를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노력을 전개하여 IEEE 802.16 표준 반영(2004/2005년)과 ITU-R의 6번째 IMT-2000 표준 채택(2007.10월)을 달성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WiBro 주파수대역인 2.3 ~ 2.4GHz대역이 IMT(4G)의 전세계 공통대역으로 확정되도록 함에 따라, WiBro의 해외 시장 개척과 WiBro Evolution 개발을 통한 4G 표준화의 선도적 활동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방송 분야에서도 2005년 국내 지상파DMB기술을 유럽표준화기구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의 기술규격으로 반영한 데 이어 2007년 12월 ITU 국제표준에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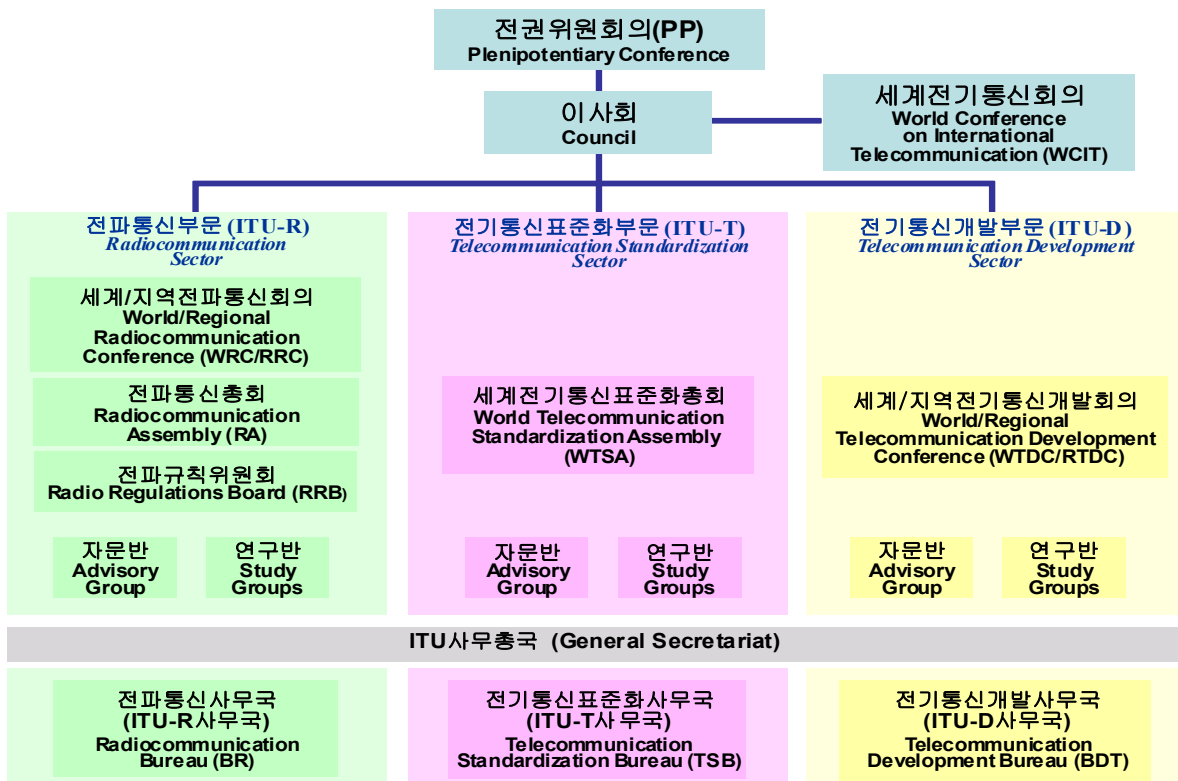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ITU-T 표준화활동은 1984년 한국전기통신공사의 CCITT 연구단 설립, 1989년 TTA의 ITU위원회 설립, 2004년 전파연구소의 한국 ITU 연구위원회 통합·재편의 과정을 거쳐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정립해왔다.

ITU-T에 대한 우리나라의 활동은 ITU-R에 비해 산·학·연의 협력 활동이 두드러지며, 최근 들어 표준화활동을 위한 ITU-T의 구조적 차원의 접근과 연구과제의 제안이 두드러지고 있다. ITU-T의 외부 표준화활동을 주시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고 세계 표준화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적시의 표준 제정을 위한 Technology Watch 시스템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Networked RFID, USN 등의 표준화를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5) 조직 구성 및 활동

ITU는 조약적 위상을 가지는 법률문서에 의해 법적 체제를 유지하며, 헌장(CS, Constitution)·협약(CV, Convention)과 업무규칙(Administrative Regulations)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의 ITU는 전기통신의 개방화·세계화·탈규제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 추가전권위원회(Additional PP)에서 기존의 ITU조직을 ITU-R, ITU-T, ITU-D로 재편하였으며 이는 새롭게 제정한 헌장·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헌장·협약은 ITU의 기본 법률문서로서 1992년 12월 22일 체결되어 1994년 7월 1일 발효되었으며, 최근의 개정은 2006년 12월(2008년 1월 1일 발효)에 있었다.



(그림 2.1 ITU 조직도)



가) 전권위원회의 (Plenipotentiary Conference)

- ITU 헌장과 협약에 규정된 조직, 활동,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기구로 4년마다 개최됨
- ITU의 모든 활동과 전략적 정책 및 기획에 대한 이사회 보고 내용 검토
- 차기 전권위원회의까지의 예산 집행기준 설정
- 사무총국의 직원 채용 및 보수지급기준 결정
- ITU의 회계 승인 및 이사국 선출, 전파규칙위원회(RRB) 위원 선출
- 사무총장, 사무차장, 각 부문국장 선출
- 회원국이 요구한 헌장 및 협약 개정안 검토 및 채택
- 타 국제기구와의 협정체결 및 개정, 이사회가 체결한 잠정협약 검토 및 조치

나)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World Conferences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 전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시 개최되며 국제전기통신서비스 및 국제통신수단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하여 국제 공중통신서비스의 능률적인 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
- ITU 회원국, UN 및 UN 산하기구, 지역통신기구, 위성통신기구 등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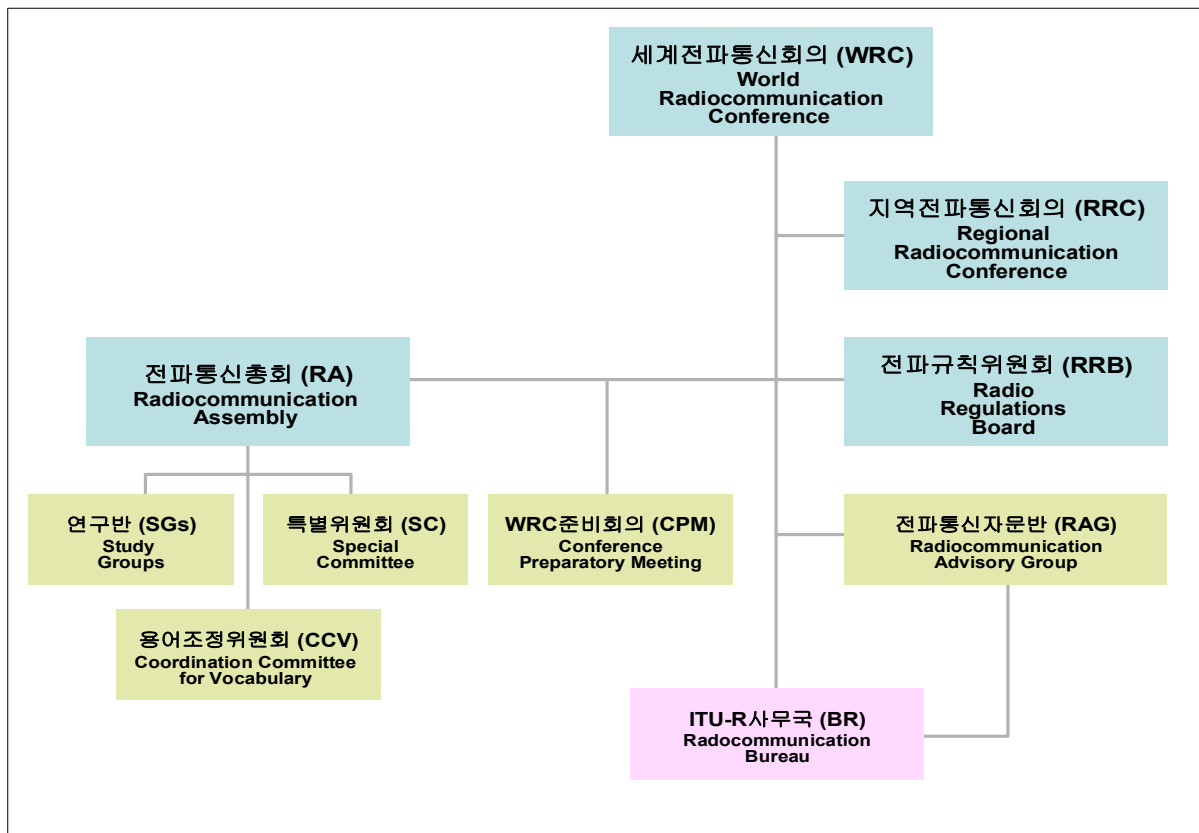
다) 이사회 (Council)

- 1947년 전권위원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세계 5개지역 (미주, 서유럽, 동유럽 및 북아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및 대양주)의 회원국수에 비례하여 전권위원회가 선출한 46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매년 개최
- 헌장, 협약, 운영규칙에서 규정된 사항과 전권위원회 및 주요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의 시행을 위한 검토 및 조치
- ITU의 전략 및 정책수립을 위한 제반 통신문제를 검토 및 심의
  - ※ 회원국수의 최대 25%, 회원국수 46개국

## (가) ITU-R (ITU Radiocommunication Sector)

### (1) ITU-R의 역할 및 구조

ITU-R은 전파통신 업무(서비스)에서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대역의 합리적·공정·효율적·경제적 이용을 보장하고, 주파수 연구를 통하여 전파통신 권고를 채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ITU-R의 작업은 세계/지역전파통신회의(WRC/RRC, World/Regional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전파통신총회(RA, Radiocommunication Assembly), 전파규칙위원회(RRB, Radio Regulations Board), 전파통신연구반(ITU-R SG, Radiocommunication Study Group), 전파통신자문반(RAG, Radiocommunication Advisory Group), 선출된 국장이 관장하는 전파통신사무국(BR, Radiocommunication Bureau)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림 2.2 ITU-R의 작업구조)

- WRC (3~4년 주기로 PP간에 1~2회 개최하며, RA와 시간·장소 연계) :  
특정의 전파통신 사안에 대해 다음의 의제를 검토
  - RR의 개정
  - WRC 권한 내 범세계적 성격의 모든 전파통신 문제
  - RRB와 BR의 활동에 대한 지시사항과 이들 활동의 검토
  - 향후의 WRC와 관련하여 RA가 검토하여야 할 사안과 RA와 전파통신연구반이 연구하여야 할 주제의 확인
  - PP에서 의제로 설정하도록 지시한 사항
- RA (3~4년 주기로 PP간에 1~2회 개최) : 자체 채택 연구과제와 PP·WRC/RRC·이사회·RRB에 의해 위임된 연구과제에 대해 권고 등 발간
  - ITU-R 활동의 관리를 위한 작업방법과 절차를 채택할 권한
  - WRC의 작업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의 제공과 WRC의 요청에 대한 조언
  - 연구반에서 보고한 권고안을 승인, 수정 또는 부결

## **(L) ITU-T (ITU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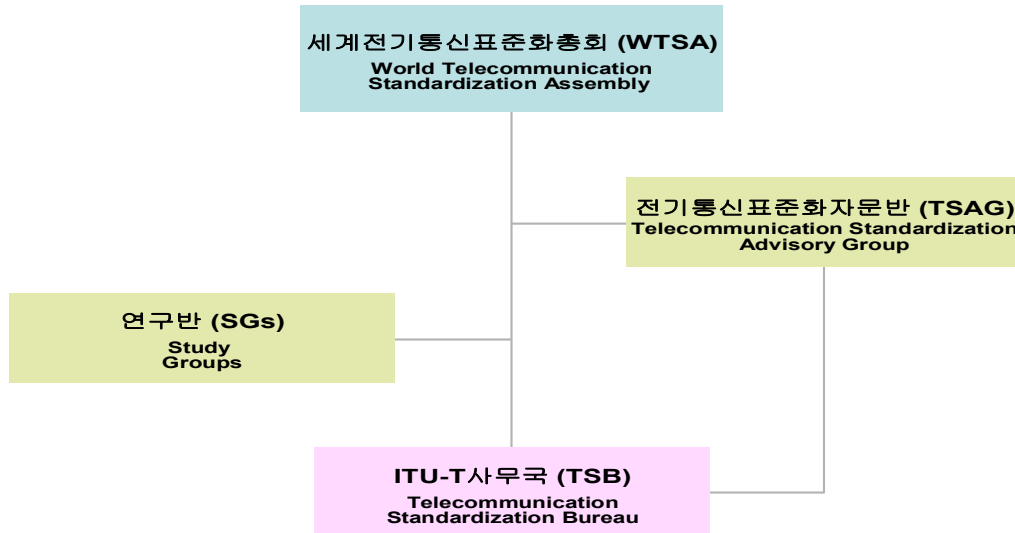
### **(1) ITU-T의 역할 및 구조**

ITU-T는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운용·요금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이의 세계 표준화를 위한 권고를 채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TU-T의 작업은 WISA,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ITU-T SG,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tudy Group),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선출된 국장이 관장하는 전기통신표준화사무국(TSB,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WISA(PP간에 4년 주기로 개최) : 전기통신표준화에 관련된 특정 사안 검토
  - ITU-T 활동의 관리를 위한 작업방법과 절차를 채택할 권한
  - 연구반에서 보고한 권고안을 승인, 수정 또는 부결하고 TSAG

보고서(TSB에 대한 조치와 WTSA의 위임사항) 검토

- 연구과제의 검토를 통해 작업계획의 승인 및 우선순위 결정
- 연구과제 배분을 포함한 연구반의 구성과 의장·부의장의 임명



(그림 2.3 ITU-T 작업구조)

## (다) ITU-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S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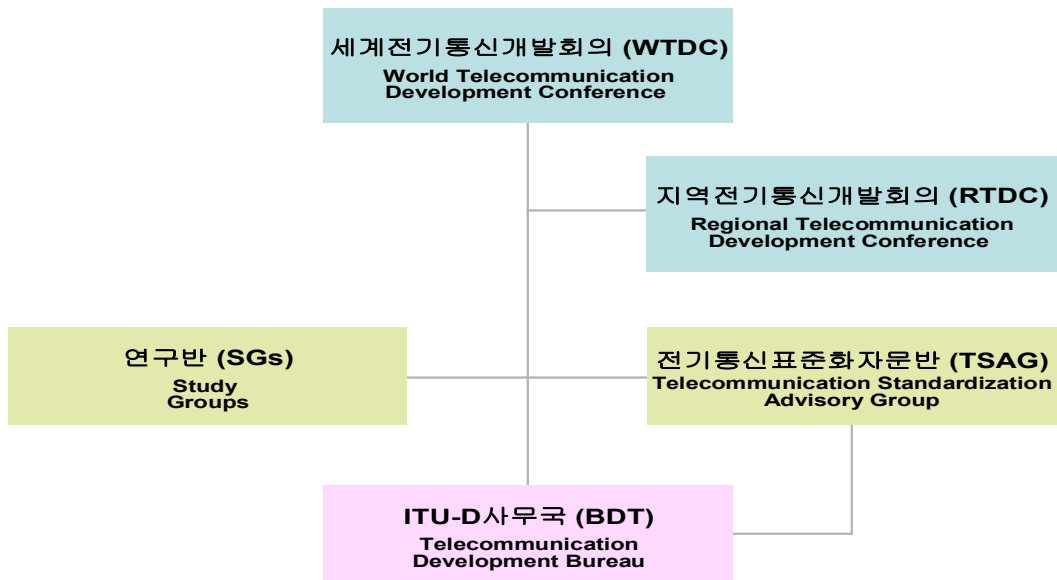
### (1) ITU-D의 역할 및 구조

ITU-D는 기술협력 및 지원활동의 제공·조직·조정을 통해 전기통신 발전을 촉진하도록 UN개발체제 또는 기금하에서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UN 전문기구이자 집행기구라는 이중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ITU-D의 작업은 세계/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WTDC/RTDC, World/Regional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전기통신개발연구반, 전기통신개발자문반(TDAG,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Advisory Group), 선출된 국장이 관장하는 ITU-D사무국(BDT,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Bureau)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WTDC는 PP나 WRC와 달리 최종 의정서를 개발하지 않으며, 최종

보고서를 발간한다. WTDC의 기능은 ITU-R·ITU-T의 총회(RA·WTSA)의 기능 및 역할과 유사하다. WTDC는 이해당사자들의 토론을 위한 포럼의 역할을 하며, 그 결과로서 프로젝트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RTDC와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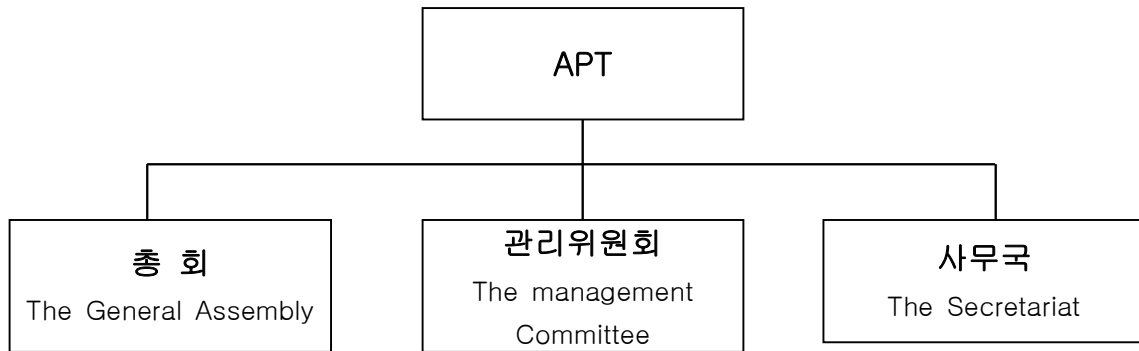
(그림 2.4 ITU-D 작업구조)

## 나.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sia-Pacific Telecommunity)

APT는 UN 아·태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로 1979년 아시아·태평양 22개국에 의해 창설된 지역 전기통신기구로 역내 방송통신발전 및 기술개발 선도, 세계 표준화 등에 아·태 지역의 의견을 결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본부는 태국 방콕에 두고 있으며 2009년 현재 회원국은 34개국이며, 준 회원국 4개 지역, 제휴 회원 96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79년 창립당시 가입 하였고, 북한은 1994년 가입하였다.

### 1) 조 직

APT 조직은 총회(The General Assembly), 관리위원회(The management Committee), 사무국(The Secretariat)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5 APT의 조직도)

#### 가) 총회(The General Assembly)

APT 최고기구인 총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회원국들과 준 회원국(지역)들로 구성되며, 매 3년마다 개최된다. 총회의 임무는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반 정책과 원칙을 결정하고, 연간 예산과 지출범위를 확정하고, 필요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총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매 정기회의 개최시 새로 선출한다. 제 11차 총회 및 32차 관리위원회가 2008년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다.

#### 나) 관리위원회(The management Committee)

관리위원회는 매년 개최되며, 회원국과 준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은 2년마다 새로 선출한다. 주요 임무는 관리위원회의 정책과 방침을 수행하고, 사무국의 기능을 관리하며 작업 프로그램, 연간 예산, 회계, 규칙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제 32차 관리위원회에서 차기 관리위원회 의장으로 우리나라 전파연구소의 위규진 박사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 다) 사무국(The Secretariat)

사무국은 APT의 상설기구로 기구 운영 및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무총장 1인, 사무차장 1인 및 직원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 기타 국제기구

### 1) 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가) 설립배경과 목적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Safe, secure and efficient shipping on clean oceans"을 표어로 12번째로 탄생한 UN의 전문기구로써 해상에서 안전, 보안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를 책임진다. 즉, 국제해사기구의 목적은 국제교역에 종사하는 해운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기술적인 문제에 관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규정이나 지침에 있어서 정부간 상호협력 촉진을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며, 해상안전, 효율적인 항해 및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및 통제와 관련하는 최고 수준의 기준을 제공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해운업은 세계의 모든 대규모 산업 중 가장 국제적이고 가장 위험한 산업의 하나이다. 모든 해운국가가 준수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기준과 규정을 개발, 시행하는 것이 해상에서 안전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19세기 중반 이후 그와 같은 몇 개의 협약이 채택되었다. IMO는 1948년에 IMO협약의 채택으로 설립되어 1958년에 첫 회의를 가지게 되었으며, 런던에 본부를 둔 유일한 UN산하기구로 되었다.



(그림 2.6 IMO본사, 영국 런던)

우리나라는 1959년 IMO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였으며 1961년 12월 31일 가입요건이 충족되었고, 1962년 4월 10일부로 가입효력이 발생되었다.

나) IMO 사무국 조직

(1) 총 회 (ASSEMBLY)

- 전회원국으로 구성 (정기총회 : 매 2년마다 1회 개최)
- IMO 최고 의결기구
  - 기구 사업계획 승인·예산 의결, 이사회 보고서 심의·의결
  - 이사국 및 사무총장 선출

(2) 이 사 회 (COUNCIL)

- 이 사 국 : 총 40개국 (임기 2년 재선가능)
- 주요기능 (연 2회 회의개최)
  - 사업계획, 예산안의 총회 상정안 검토, 사무총장 지명 등
- 40개 이사국 현황 ('07. 11. ~ '09. 11.)

구 분	구 성	국 명
A카테고리 (10개국)	주요 해운국	한국, 그리스,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파나마
B카테고리 (10개국)	주요 화주국	네덜란드, 독일, 방글라데시,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인도, 캐나다, 프랑스
C카테고리 (20개국)	지역 대표국	남아공, 덴마크, 말레이시아, 멕시코, 몰타, 바하마, 사우디, 사이프러스, 싱가포르, 이집트, 인도네시아, 칠레, 태국, 터키, 필리핀, 케냐, 호주, 뉴질랜드,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 '59년 설립된 국제해사기구에 가입('62년)한지 30년만인 '91년에 최초로 C그룹 이사국 진출
- 우리나라는 '01.11. 제22차 총회에서 IMO A그룹 이사국으로 진출한 후 '07.11. 제25차 총회에서 IMO A그룹 이사국으로 4연속 재선
  - 국가위상 및 해운·조선 산업의 국제지위 상승으로 10년 후인 '01년에 최상위 그룹인 A그룹 이사국 진출
  -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은 외형상 선두그룹에 속해 있으나, 실질적 영향력은 미흡



## 2)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INTELSAT는 1964년 8월 미국 워싱턴에서 11개 국가가 참여한 세계 상업위성 잠정조직으로 출발했다. 그 후 1969년부터 2년 간 이루어진 정부간 교섭을 통해 INTELSAT에 관한 운용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를 근거로 1973년 2월 12일부터 항구적인 조직으로 운용되기 시작했다. 이 기구의 설립 목적은 세계 상업통신 위성궤도의 우주부문 설계·개발·건설·운용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이 기구의 설립 취지는 세계 모든 지역에 대하여 차별없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국제위성통신 서비스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7년 5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현재 회원국 수는 143개국이다.

주요 조직으로는 당사국 총회(매 2년 개최)·서명자회의(년 1회)·이사회(27개 이사국, 년 4회)가 있으며, 이 기구의 총자산은 19기의 위성체(대서양 10개·인도양 5개·태평양 3개·아태지역 1개) 등 35억 달러에 이른다. 1999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투자율은 약 1.62%로 2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란·터키·파키스탄과 연합하여 공동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각국에 전기통신부문 경쟁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복수서명자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현재 관련협정 및 운영협정 개정에 대한 각국의 비준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INTELSAT는 1980년대 이후 위성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민간위성 시스템 등장으로 종래 독점적인 위상을 차지해오던 이 기구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8년 7월 헤이그에서 독립된 상업자회사(New Sky Satellite N.V)를 설립했다. 1999년 10월 폐낭에서 개최된 제24차 INTELSAT 총회에서는 추가로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의 세부사항 추진을 위한 민영화작업반(PWP)을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INTELSAT 민영화에 따른 정부간 기구의 임무와 존치기간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하여 2000년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제25차 INTELSAT 임시당사국 총회에 제출했다.

### 3) 국제이동위성기구(INMARSAT)

INMARSAT는 1979년 7월 미국 등 7개국이 국제해사위성기구에 관한 협약 및 국제해사위성기구에 관한 운용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설립되었으며 1982년 미국 콤셋(Comsat)으로부터 해사통신위성 3기를 임대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그후 변화하는 전세계 위성통신서비스 추세에 따라 기존에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항공 및 육상에서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하고 1994년 12월 제10차 임시총회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명칭을 개정하였다.

1995년 자회사로 중간원형 궤도시스템(ICO)을 설립하였고, 9기의 위성(대서양3, 인도양3, 태평양3)을 이용하여 2001년부터 전세계를 대상으로 해상 및 항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광대역응용서비스, 첨단멀티미디어서비스, 기업응용서비스, 방송, 도서벽지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세대 위성통신사업을 하고 있다.

INMARSAT는 위성을 이용하여 해상 조난 예방 및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간 또는 선박과 육지간 통신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INTELSAT가 고정지점간 위성통신방식을 관장하는 데 비해 INMARSAT는 위성을 이용한 국제간의 이동통신을 관장했다.

INMARSAT는 원래 선박통신과 선박이나 조난당했을 때 비상통신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이동체를 서비스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가입자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1985년 10월 제4차 총회에서 항공통신을, 1989년 1월 제8차 총회에서는 육상이동통신 및 휴대용 단말기기를 이용대상에 각각 포함시킴으로써 서비스 영역을 계속 확대시켜왔다. INMARSAT는 제약을 극복하면서 판매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단말기의 소형화·경량화 및 통신제공 범위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INMARSAT에서 운영하는 통신서비스는 태평양·인도양·대서양의 적도 상공 3만 5800km 정지궤도상에 떠 있는 10개의 통신위성을 통해 선박 상호간·선박과 육지간·항공과 육지간에 국제자동전화 및 텔렉스를

중계하는 것이다. 종래 단파무선통신과는 달리 위성통신은 일기나 전리층의 장애를 받지 않는다.

주요 조직으로는 최고기구인 당사국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이사회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권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2년마다 1회 정기총회가 개최된다. 22인의 서명자 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총회의 의견 및 권고를 적절히 고려하여 이 협약 및 운영협정에 적합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우주 부분의 제공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총회에 보고안 작성 및 사무국 감시기능을 가지고 매년 4회의 회의가 개최된다. 사무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회원국이 참가하는 협약 및 서명자에 의해 체결되는 운영협정이 있다. 84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본부는 영국 런던에 있다.

우리나라는 1985년 44번째로 가입했는데 1999년 12월 말 기준 투자율은 약 2.29%로서 87개국 중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호주 및 인도와 연합하여 공동이사국으로 진출했고, 1993년에는 대표이사국을 맡기도 했다. 이 기구도 INTELSAT와 마찬가지로 민간 위성시스템의 활성화에 따른 위성사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직된 조직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업화된 조직으로 개편했다.

1999년 4월 제12차 총회에서 협약 개정 안을 확정하고 2000년 1월 24일 기준으로 33개국이 비준했다. 이에 따라 1999년 4월 15일자로 민영회사인 인마셋주식회사(INMARSAT Holdings Limited)와 소규모 정부간 기구(IMSO)로 분리되었다.

## 2. 국제협약 및 법·제도

국내 전파관리정책 및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국제협약인 국제전기통신헌장·협약,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등의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 가. 국제전파관련 협약

#### 1) 국제전기통신헌장 및 협약

ITU의 기본문서인 국제전기통신협약은 전권위원회의 때마다 개정되므로 심의에 많은 시간과 서류의 작성에 적지 않은 비용이 요하기 때문에 그 개선이 요망되어 오다가 1989년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프랑스의 니스에서 7년 만에 개최된 ITU 전권위원회의에서 동 협약을 헌장과 협약으로 분할하였다.(동 협약을 분할하기로 하고 초안 작성을 위한 전문가 그룹의 설치를 결정한 것은 1982년 나이로비 회의서이다.) 그 분할은 대체로 현행 나이로비협약의 제1부(기본규정)는 헌장으로, 제2부(일반규정)는 협약으로 분할되었는데, 현행 헌장 및 협약은 1994년 교토 전권위원회에서 개정되었다.

헌장 및 협약의 체계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헌장은 연합의 기본구조와 정신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구성은 기본규정, 전파통신분야, 전기통신표준화분야, 전기통신분야, 연합의 기능에 관한 기타규정, 전기통신에 관한 일반규정, 전파통신에 관한 특별규정, 국제연합, 국제기구 및 비회원국과의 관계, 최종규정으로 되어 있다.

한편, 협약은 주로 운용 절차적인 사항으로 연합의 기능, 회의에 관한 일반규정, 절차규칙, 기타규정, 전기통신업무 운용에 관련된 각종 규정, 중재 및 개정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헌장·협약 중 전파관리 분야에 관계되는 몇 가지 주요사항을 분석·정리 하고자 한다.

## 나. 국제전파관련 법·제도

### 가) 전기통신에 관한 일반규정

#### (1) 전기통신의 중지(제34조)

- 회원국은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그 법령,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보이는 모든 개인정보의 전송을 중지시킬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발신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회원국은 또한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그 법령,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보이는 모든 개인적인 전기통신을 중단시킬 권리를 유보한다.

#### (2) 업무의 정지(제35조)

- 각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또한 일정한 관계에 있어서만 국제전기통신 업무 및 일정한 종류의 발신, 착신이나 중계통신의 모두 또는 어느 하나를 정지시킬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동조치는 사무총장을 통하여 타 회원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 (3) 책임(제 36조)

- 회원국은 특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업무에 이용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4) 전기통신의 비밀(제37조)

- 회원국은 국제통신의 비밀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전기통신제도에 적합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 그러나, 회원국은 그 국내법의 적용 또는 자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통신을 권한 있는 기관에 통보할 권리를 유보한다.

(5) 전기통신로 및 설비의 설치, 운용 및 보호(제38조)

- 회원국은 국제전기통신의 신속하고 부단한 교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통신로와 설비를 최상의 기술적인 상태 하에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이러한 통신로와 설비는 가능한 한 실제적인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이는 적절한 운용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과학 및 기술 발전에 낙후되어서는 안된다.
- 회원국은 그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통신로와 설비를 보호하여야 한다.
- 모든 회원국은 특별협정에 의해 타 조건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국제전기통신회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위반의 통보(제39조)

- 회원국은 이 헌장 제6조(연합법률문서의 시행)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헌장과 협약 및 업무규칙의 규정위반을 상호 통보한다.

(7) 인명안전에 관한 전기통신의 우선순위(제40조)

- 국제전기통신업무는 해상, 육상, 항공 또는 외기권에서의 인명 안전에 관계된 모든 전기통신 및 전염병에 관한 세계보건기구의 특히 긴급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절대적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8) 특별협정(제42조)

- 회원국은 자국과 자국의 공인된 운영기관 및 정당하게 공인된 타 운영기관을 위하여 회원국 전반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전기통신 문제에 대해 특별 협정을 체결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이 특별협정은 그 시행으로 인하여 타 회원국과의 전파업무에 야기할지도 모르는 유해한 혼신에 관한 한, 그리고 다른 회원국의 전기통신업무의 운용에 야기할지도 모르는 기술적 유해사항에 관한한 이 헌장, 협약 혹은 업무규칙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 나) 전파통신에 관한 특별규정

### (1)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및 정지위성 궤도의 이용(제44조)

- 회원국은 필요한 업무를 만족할 정도로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주파수의 수와 스펙트럼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회원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한 최신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 회원국은 전파통신업무를 위하여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과 정지위성 궤도가 유한한 천연자원이라는 점과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수요와 특정국가의 지리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나 국가군이 양자에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통신규칙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 효율적, 경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 (2) 유해한 혼신(제45조)

- 모든 무선국은 그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타 회원국 또는 공인된 운영기관 및 전파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당히 허가되어 전파통신 규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기타 운영기관의 전파통신업무나 통신에 유해한 혼신을 일으키지 않도록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 각 회원국은 자국이 공인한 운영기관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당히 허가된 기타 운영기관에 대하여 상기 '가'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또한, 회원국은 모든 종류의 전기 기기와 설비운용이 상기 '가'에서 언급된 전파통신업무 또는 통신에 유해한 혼신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3) 조난 호출 및 통신(제46조)

- 무선국은 발신처를 불문하고 조난 호출 및 통신을 절대적 우선 순위로 접수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한 통신에 응답하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다.

(4) 허위 또는 기만적 조난신호, 긴급신호, 안전신호 또는 식별신호(제47조)

- 회원국은 허위 또는 기만적 조난·긴급·안전신호, 식별신호의 전송 또는 유포를 방지하며 관할 범위 내에서 이러한 신호를 전송하는 무선국의 위치파악과 확인에 협력하는데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5) 국방기관의 설비(제48조)

- 회원국은 자국의 군용 무선설비에 관해 전적인 자유를 보유한다.
- 그러나, 이러한 설비는 조난신호의 구조 및 유해한 혼신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에 관계된 법규정과 이러한 설비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이용되는 전파형식 및 주파수에 관한 업무규칙의 규정을 가능한 한 준수하여야 한다.
- 또한 이러한 설비가 공중통신의 업무 또는 업무규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타 업무에 관여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표2.4 일반규정과 특별규정 요약**

전기통신에 관한 일반규정	특별규정
1. 국제전기통신업무 이용에 대한 공중의 권리 2. 전기통신업무의 중지 3.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이용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5. 전기통신비밀 6. 전기통신로 및 설비의 설치·운용 및 보호 7. 위반의 통보 8. 인명안전에 관한 전기통신의 우선 순위 : 9. 관용통신의 우선 순위	1.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및 정지위성궤도의 이용 2. 유해한 혼신 3. 조난호출 및 통신 4. 허위 또는 기만적 조난신호, 긴급, 안전신호 또는 식별신호 5. 국방기관의 설비



## 다) 전파규칙(RR : Radio Regulations)

전파규칙은 유해한 혼신을 방지하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기 위한 국제적 조정의 필요성에 의해 제정된 국제전기통신 조약에 부속되어 있는 업무 규칙의 하나로 주로 전파통신의 용어와 정의, 9kHz~250GHz까지의 주파수를 업무별로 분배하는 것, 주파수 조정, 통고 및 등록, 우주 전파통신 업무의 국의 특성, 혼신, 조난 통신 및 안전 통신 등에 관한 규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는 개별 국가의 주파수계획에 대한 기본 골격 및 주요 제한사항을 제공하는데 국제수준의 분배는 전 세계를 3개 지역으로 나누어지며, 한국은 아시아지역과 오세아니아 지역을 포함하는 제3지역(Region3)에 포함된다.

각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현재와 미래의 전파사용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준비하고, ITU회원국의 전기통신 주관청 대표들이 화합하여 국제통신과 전파통신분야의 국제조약 및 전파규칙 등을 제·개정하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에서 자국의 견해가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국제적 수준의 분배는 일정한 주파수 대역을 특정 서비스에 분배하는 업무분배와 지역별 분배를 의미하는 지역분배를 포함한다.